고용노동부 | 보도자료 |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

보도시점 2026. 5. 26.(화) 12:00 (2026. 5. 27.(수) 조간)

6월 1일부터 2주간,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집중점검

- 폭염 고위험사업장 1,000개소 대상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준수 점검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**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(2주간)** 건설·조선·물류 등 **폭염 고위험사업장**을 **대상**으로 '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' 등 **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**한다.

* ①시원한 물, ②냉방장치, ③휴식(2시간마다 20분 이상), ④보냉장구 지급, ⑤119 신고

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높았고, 앞으로도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**올해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에 앞서, 폭염 취약 현장의 준비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**하기 위해 이루어진다.

특히,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**14시~17시 사이에 불시 점검**을 **실시**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, 확인된 **법 위반 사항**에 대해서는 **시정 중심으로 조치**한다.

또한, 올해 기상청에서 '**폭염중대경보**'를 **신설**함에 따라 **노동부**는 **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**을 **세분화**하였고, 이번 집중점검에서 사업장이 **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**, **옥외작업중지** 등 **단계별 권고 조치**를 **이행**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.

[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]

- **(체감온도 33℃ 이상, 폭염주의보) 작업시간대 조정** 또는 옥외작업 단축
- **(체감온도 35℃ 이상, 폭염경보) 무더위 시간대**(14시~17시) **옥외작업 중지**
- **(체감온도 38℃ 이상, 폭염중대경보)** 긴급조치 작업 외 **옥외작업 중지**

한편, 노동부는 **지난 5월 14일 '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'을 발표**하고 **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」을 운영**하고 있다.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**노사 모두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**하고 **개선**하도록 **유도해 나갈 계획이며,**

집중점검이 종료되는 **6월 15일부터 본격 감독체계**로 **전환**하여 **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**이다.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"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**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**하면서 **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**하는 등 「**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**」**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**할 수 있다"라고 강조하면서,

"특히, 올해는 기상청에서 '**폭염중대경보**'를 신설한 만큼, **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,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이행**해 **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**해 주기 바란다"라고 **당부**하였다.

붙임 1. 폭염으로 인한 「온열질환 예방수칙」
2.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	책임자	과 장	배영일 (044-202-8901)
		담당자	서기관	나상명 (044-202-8881)
			사무관	이근배 (044-202-8882)
			주무관	홍현종 (044-202-8945)
담당 부서	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팀 장	신백우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	박현건 (044-202-8891)
			주무관	한진우 (044-202-889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폭염으로 인한 「온열질환 예방수칙」

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

18개 모국어 번역본

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℃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.

온열질환 예방조치

- 작업장소에 온·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
-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
-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(쉼터 및 그늘진 장소) 설치

체감온도 계산기

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

물	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
냉방장치	폭염작업 시 (이동식)에어컨,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 · 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
휴식	체감온도 31℃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℃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
보냉장구	냉각의류,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
119 신고	온열질환자 · 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

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

체감온도 33℃ 이상 폭염주의보	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
체감온도 35℃ 이상 폭염경보	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
체감온도 38℃ 이상 폭염중대경보	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
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OPEN

온열질환 민감군 관리

온열질환 민감군

- 폭염작업 신규배치자
-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
- 고령자, 고혈압·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

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

-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작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단계적 증가
- 주기적으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
-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
- 폭염작업 시간 단축, 휴식 시간 추가 배정

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

*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

온열질환 증상

- 평소보다 높은 체온, 땀을 많이 흘림, 어지러움, 메스꺼움, 근육 경련, 의식 저하

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

-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.
-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.
-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. ※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
-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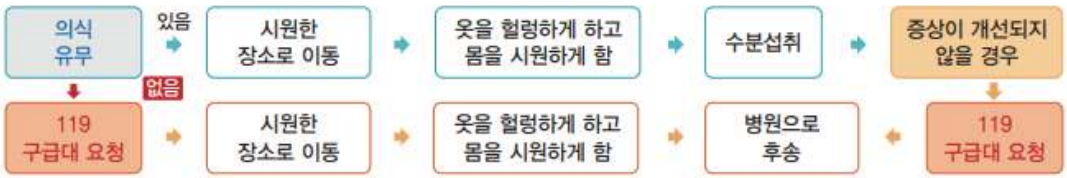

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

밀폐공간은 '질식사망 위험공간'입니다. 폭염 시 매우 위험합니다.

- 밀폐공간(탱크 · 저장용기의 내부, 맨홀 등)은 기온 상승 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'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장소'입니다.

반드시 「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」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❶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
❷ 작업전 · 작업중 지속적인 환기
❸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

※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('25.12.1) 주요내용
❶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❷ 측정결과 기록 · 보존 ❸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❹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· 교육 강조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

붙임2 **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**

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

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

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	☐적정 ☐개선 필요

냉방장치 실내·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

폭염작업 시 (이동식)에어컨,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·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	☐적정 ☐개선 필요
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	☐적정 ☐개선 필요

휴식 주기적으로 쉬기

체감온도 31℃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	☐적정 ☐개선 필요
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	☐적정 ☐개선 필요

보냉장구 근로자 체온 낮추기

냉각의류,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	☐적정 ☐개선 필요

119 신고 응급조치 및 119 신고

온열질환자·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	☐적정 ☐개선 필요
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	☐적정 ☐개선 필요

그 외 예방조치

작업장소에 온 · 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	☐적정 ☐개선 필요
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	☐적정 ☐개선 필요
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(쉼터 및 그늘진 장소) 설치	☐적정 ☐개선 필요
휴식시간 추가 배정 등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, 폭염작업 시간 단축 * 신규배치자,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, 고령자 등	☐적정 ☐개선 필요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